

로써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보상비는 '97년 완료대상중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증액 등의 기타 사유로 4건에 1억 2,600만원, 도로 소과 보수비 4억 9,100만원, 동사무소에 추가배정 할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금회 추경예산중 3건에 총 29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13억 6,5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9억 7,500만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6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개 사업은 국고보조,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체계중에 있으나 설계기간의 부족과 건립비의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2회 추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입과 이에 따른 명시이월 그리고 도로보상비 부족분, 도로정비 보수와 보안등 보수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盧東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俞載漢 專門委員 俞載漢입니다.

'97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먼저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차 추경후에 간주처리된 14억 4,163만 7,000원과 금회 추경예산 38억 5,682만 5,000원을 합하면 총 52억 9,846만 2,000원을 제하면 순수 추경된 예산액은 30억 3,56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97년 영등포구 총 예산 1,461억 7,514만 6,000원 대비 2.08%가 증액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차 추경예산의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징수 세입예산은 없으며, 조정교부금 6억 9,500만원과 보조금 23억 4,069만 6,000원으로 총 30억 3,569만 6,000원이며, 1차 추경예산 이후에 간주처리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4,000만원과 조정교부금 1,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2억 5,293만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3,870만 7,000원으로 총 14억 4,163만 7,000원으로써 2차 추경의 총 세입은 52억 9,846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경후의 간주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회수 및 월 일	내 용	금 액
총 계		1,302,930
제 7회 ('97. 7. 25)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	15,994
제 8회 ('97. 7. 25)	병역의무자 여비 추가 지원	23,000
제 9회 ('97. 8. 28)	대림3지구 교통개선 시비보조 폰백킹 기기설치 시비보조	352,084 3,000
제 10회 ('97. 9. 11)	자원봉사센터설치국비보조(지방교부세) 깨끗한거리조성 시비보조	40,000 30,000
제 11회 ('97. 10. 22)	매립지 조성비부담 시비보조 학교폭력 근절지원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근절지원 시비보조	827,532 10,000 1,320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31억 3,982만 5,000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7억 1,700만원으로 38억 5,682만 5,000원입니다. 이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억 2,112만 9,000원의 경정예산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액 38억 5,682

만 5,000원에서 경정예산 8억 2,112만 9,000원을 제하면 순수 세출예산은 30억 3,569만 6,000원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차 추경후에 간주처리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753만 2,000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8억 2,753만 2,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의 300만원, 교통관리 3억 5,208만 4,000원과 민방위관리 2,300만원으로 총 13억 293만원이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해당 국별 세출예산은 먼저 시민국 소관의 사회복지 시설인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13억 6,569만 6,000원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9억 7,500만원이며,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2차 보전금 7억 9,912만 9,000원으로 총 31억 3,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정된 청소관리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8억 2,753만 2,000원을 지원받아 이미 간주처리하였으므로 본 예산의 매립지 공사 부담금 7억 6,112만 9,000원이 경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추경 세출예산의 사회복지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시기적으로 금년에 사업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98년도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이며,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1,700만원으로 도로건설 시설비의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과 도로정비 소파보수 등 5억 9,1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한 바 사업의 중요성과 낭비적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몇 가지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의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당초 예산에도 편성되었음에도 1, 2차 추경에까지 같은 사업에 보상비 요청이 되고 있음은 보상비 산출에 정밀도가 부족하였다고 보며, 도로소파 보수 등은 자연 파손 또는 침하 등의 예가 있겠으나 무단 굴착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아 행위자에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도블럭 포설에 있어 기 포설된 4각 보도블럭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벽돌식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며, 또한 상·하수 관리의 강변 육갑문 구조물 보수공사비 역시 본 예산에 6,000만원을 요청하

여 승인하였던 바, 이 예산으로는 보수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점검 및 보수의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98년도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시에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시민보사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구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97년도 第2次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東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裴基漢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裴基漢 委員 裴基漢 委員입니다.

우선 세입을 하기 전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단위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가예산 요구에 보면 영등포1동이 2,100만원, 도림동이 2,900만원, 당산1동이 100만원, 신길3동이 7,500만원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해서 4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영등포1동, 도림동, 당산1동, 신길3동에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모자라게 책정을 했습니까? 책정한 데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모자랐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裴基漢 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순수 보상비입니다.

○裴基漢 委員 100만원도 보상비에요?

○建設局長 南承雲 행정처리하는데 말하자면 그 지역의 공탁을 하러니까 수수료가 100만원 필요해서 올린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비가 한 동 아니면 두 동이 미처 못나가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裴基漢 委員 영등포1동 2,100만원, 도림